

한홍구 전 운영위원의 반박문에 대한 손잡고 진상조사소위 입장

들어가는 말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관련 사건 인권·노동권 침해 진상조사 소위원회>(이하 약칭 ‘손잡고진조위’)는 1차에서 19차까지 진행된 손잡고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를 포함한 60여 개가 넘는 관련 자료들을 이미 충분히 검토했고, 면담이나 서면을 통해 확인 가능한 1기 운영위원들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쳤으며, 가급적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기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관련 사건 인권·노동권 침해 진상조사 보고서>(이하 약칭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했음을 밝힌다. 물론 한홍구 전 운영위원(이하 약칭 ‘한홍구 전 위원’)의 진술을 정식으로 청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한홍구 전 위원의 입장은 확인한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반박문과 차이가 없다는 점도 밝혀둔다. 요컨대 한홍구 전 위원의 입장을 청취했다 해도 결과적으로 진상조사보고서 내용 가운데 달라질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 역시 밝힌다.

손잡고진조위는 지난 7월 20일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첫째, 한홍구 전 위원(이하 ‘한홍구 전 위원’)의 독단적인 사무국 운영이 불러온 활동가에 대한 인권·노동권 침해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시민사회에서 활동가의 인권·노동권 침해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며, 둘째,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인권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훈으로 삼기 위함이며, 셋째, 나아가서 우리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선도해야 할 시민사회 내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22일 한홍구 전 위원은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반박문(약칭 ‘반박문’)을 보내 현재의 손잡고를 둘러싼 문제는 자신의 과오 때문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 명예살인’을 주도한 손잡고진조위 위원들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박문에서 제시된 입증 자료들은 반박문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없으며 실제 반박문의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들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박문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오히려 손잡고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홍구 전 위원 개인 또는 평화박물관의 영역처럼 사유화하려는 인식이 반박문에 드러나는데, 한홍구 전 위원은 계속해서 손잡고 설립과 함께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본인의 공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공로를 통해 손잡고 및 활동가에 대한 간섭과 독자성 부정을 정당화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안타깝게도 그의 의도와 달리 조직 사유화의 전형적인 행태로 비치게 될 뿐이라는 점 역시 밝혀둔다.

이에 손잡고진조위는 위 진상조사보고서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손잡고진조위는 이 사태의 핵심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첫째가 손잡고 활동가의 고용 관계이며 둘째가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이다. 그리고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활동가의 문제 제기로 인한 부당 해고 과정이다. 여기서는 지적된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하기로 하며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한 해고 과정은 진상보고서로 같음한다.

1. 고용 관계

손잡고진조위는 지난 2014년 5월 활동가를 고용한 주체가 누구였는가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손잡고 활동가는 2014년 5월 손잡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채 공고(사진1)를 확인하고 공고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원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한홍구 전 위원이 아닌 다른 손잡고 운영위원으로부터 면접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은 당시 손잡고 대표에게 보고된 바 있다. 활동가가 한홍구 전 위원을 처음으로 대면한 것은 채용이 확정되어 출근을 시작한 2014년 6월 2일이었으며 첫 대면 당시 고용 관계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한홍구 전 위원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첫 출근 일에 활동가를 대면한 것을 두고 최종 면접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홍구 전 위원은 2015년 7월 9일, 활동가에게 “손잡고 활동가를 그만두고 평화박물관에 다시 지원해서 업무를 배당받으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손잡고 운영위원과의 최종 면접을 부정하며 “내가 최종면접을 본 것”이라고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활동가는 첫 출근 후 자신을 고용한 주체가 손잡고가 아닌 평화박물관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과정을 겪은 바 없었는데, 이는 자신이 손잡고 활동가로 지원한 동기와 세 차례의 면접 과정 그리고 당시 손잡고 대표의 확인 과정까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채용 직후 진행된 손잡고 6차 운영위원회(2014.6.13.) 자료의 <보고사항> 가운데 <사무국1> 보고 첫 머리에 <신입 윤지선 활동가>로 서면 보고되어 있다. 만약 평화박물관 활동가로 채용되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채용-면접-회의 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첫 급여 지급일을 앞두고 손잡고의 단체 여건 상 바로 근로계약 체결을 할 수 있

는 조건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당시 평화박물관의 사무처장이 편의상 평화박물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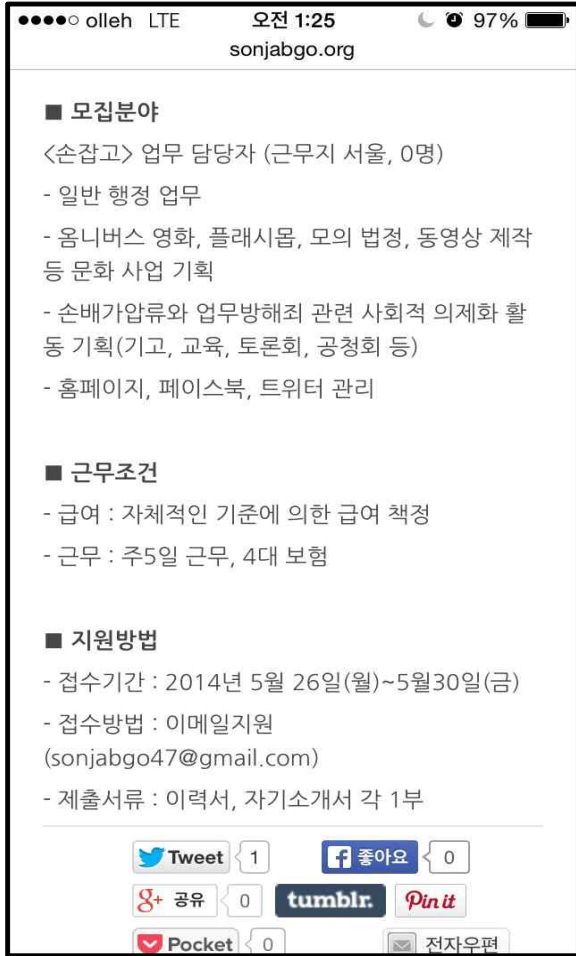


사진1: 2014.5월 손잡고 홈페이지 채용 공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종용하며 이 계약이 형식적임을 강조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듯이 <한홍구 전 위원-사무처장-활동가> 사이의 위계 관계가 존재했으므로 활동가가 이에 저항하기는 어려웠으며, 활동가 역시 당시 손잡고 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진의 선의를 믿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만일 이 과정을 두고 활동가가 평화박물관 활동가로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이른 바 채용 사기 행위에 가까운 심각한 불법 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홍구 전 위원 등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2. 불투명한 재정 운영

재정 운영의 불투명함과 관련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투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한 사람의 전횡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역설적으로 반박문에 실린 내용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한 대목을 살펴보자.

다만 2015년 상반기에 평화박물관이 케테 콜비츠 전시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초청과 같은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로 CMS 배분이 한두 달 늦어진 적은 있었지만, 재정의 투명성이 문제될만한 일은 전혀 없었음을 밝혀둔다.(반박문 발췌)

평소에도 평화박물관은 정기적으로 배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평화박물관은 평소 손잡고의 통장{국민은행 (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으로 배분을 실시하였는데 2014년의 경우 6월분 2차 회비는 9월에, 8월분 회비는 10월에, 2014년 12월분 및 2015년 1월분 회비는 2015년 3월에, 2월분 회비는 6월에, 4월분 및 5월분 회비는 8월에 이체하였다. 그러나 회비를 뒤늦게 이체하는 데에 관해 명확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히 한홍구 전

위원이 반박문에서 언급한 위 내용에 관해서는, 손잡고와 무관한 다른 사업들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가 CMS 배분이 늦어져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른 사업들로 인한 자금 악화로 CMS 배분이 늦어진다면 손잡고와 무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손잡고의 재정으로 충당됐던 건 아닌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언급인 것이다.

참고로 이 부분에 관해 손잡고진조위가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손잡고 14차(2015.1.19.) 운영위에 보고된 CMS 잔고와, 15차(2015.2.25.) 운영위에 보고된 CMS 잔고 간에 7백4십여 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잔고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손잡고 활동가가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에게 문의하자,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은 처음에는 “케테콜비츠전 때문에 평화박물관에 돈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손잡고 활동가가 운영위의 허가 없이 손잡고 활동 외의 목적으로 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문제제기 하자, 한홍구 전 위원과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이 논의해, 1) 2015년 1월부터 손잡고 활동가의 임금을 손잡고 CMS 통장에서 지출한 것이며, 2) 앞서 2014년 평화박물관에서 손잡고 활동가에게 지출한 임금에 대해서 소급한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후 18차 운영위원회의 안건지에는 당해 금액이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2, 3월 임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6. 4. 평화박물관으로부터 받은 금융거래내역서 비교란에는 케테콜비츠 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등 결과적으로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배분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손잡고는 지난 2016년 4월 1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회계 증빙 자료와 잔여 CMS 기금을 요구하는 공문(첨부1)과 위에서 언급된 케테 콜비츠 전시에 들어간 300만원의 비용에 대해 해명하고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첨부2)을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 손잡고 1기의 운영위에 이 같은 재정 전용 상황을 보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었는데, 위 반박문에서 주장하듯이 재정의 투명성이 문제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음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회계감사를 받거나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2016년 6월 이전까지의 손잡고의 재정 운영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손잡고는 1기가 출범한 2014년 2월 26일부터 손잡고 2기 출범직전인 2016년 4월 24일까지 회계감사조차 선임된 적이 없었고 회원 총회 등의 의결 기구도 소집된 적이 없었으며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회계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평화박물관이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명분으로 개설한 평화박물관 계좌를 통해서만 모든 사업이 추진됐으며 2015년 12월까지 단 한 차례도 손잡고 명의의 공식계좌로 CMS 기금을 이체하지 않았다. 한홍구 전 위원은 지난 2015년 12월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공문(첨부3)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

라 할 수 없이 그동안 모인 CMS 기금이라며 17,583,529원(2015년 11월분까지)을 당시 임시대표를 경유하여 손잡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평화박물관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평화박물관 통장 사본이나 입출금내역 공식자료는 수차례에 걸친 공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서야 한홍구 전 위원은 평화박물관의 비용으로 지급되었던(그러나 실제 평화박물관 비용으로 지급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손잡고 활동가의 2014. 7월분~11월분, 2015년 2,3월분 임금과 한홍구 전 위원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사무공간 이용료 금 570만원(월 30만원 × 19개월)을 공제한 잔액만 이체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체액수가 너무나 적어 사실상 이체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

3. 반박문 내용의 일관성 결여

한홍구 전 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박문 내용을 살펴보면 주장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사안별로 유리한 부분을 부각시키려다 보니 전체적으로 논리의 정합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박문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 활동가의 고용 주체는 명백하게 평화박물관이며 활동가 본인도 그렇게 알았을 것인데 사무처장과 감정적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활동가 혼자서 ‘독립운동 하듯이’ 손잡고 소속이라고 주장하다가 스스로 사직했으며 평화박물관은 결코 해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반박문을 통해 한홍구 전 위원이 손잡고 설립 당시 자신이 행했던 공로를 그토록 부각시킨 이유는 손잡고가 평화박물관의 인큐베이팅을 받는 일종의 ‘자회사’로서 손잡고에 대한 모든 실질적 운영 권한은 자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활동가의 고용 주체가 평화박물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손잡고 CMS 회비에서 활동가의 임금을 공제한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홍구 전 위원의 주장대로라면 평화박물관이 활동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그리고 2015년 2월과 3월 등 8개월뿐이었다.(첨부 2-별첨1) 한홍구 전 위원의 주장대로 활동가가 평화박물관 소속이라면 최소한 해고통지서를 보낼 때까지의 13개월에 대한 급여를 일관되게 지불했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화박물관이 사무국의 역할을 맡아 손잡고에 사무공간을 제공했다고 하면서도, 왜 임대료를 임의로 산정하여 손잡고 CMS 회비에서 공제하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거기에 활동

가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평화박물관이 활동가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는데 활동가가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 재정 운영의 불투명

성을 지적하면서부터 갈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는 부분은 이미 진상조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하지만 해고 통지서 내용 중 해고 사유에 손잡고 운영위가 언급되어 있는 점은 해고 통지를 함에 있어 평화박물관 측 역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부당 해고에 해당되겠지만 그나마 논리의 정합성이 성립하려면 손잡고가 고용 주체가 된 상태에서 손잡고 소속의 활동가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그 해고 사유에 손잡고 운영위가 언급되는 것이 그나마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반박문에 기술된 내용으로 보면 한홍구 전 위원 스스로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기보다는 활동가 채용 시부터 활동가를 평화박물관과 손잡고 소속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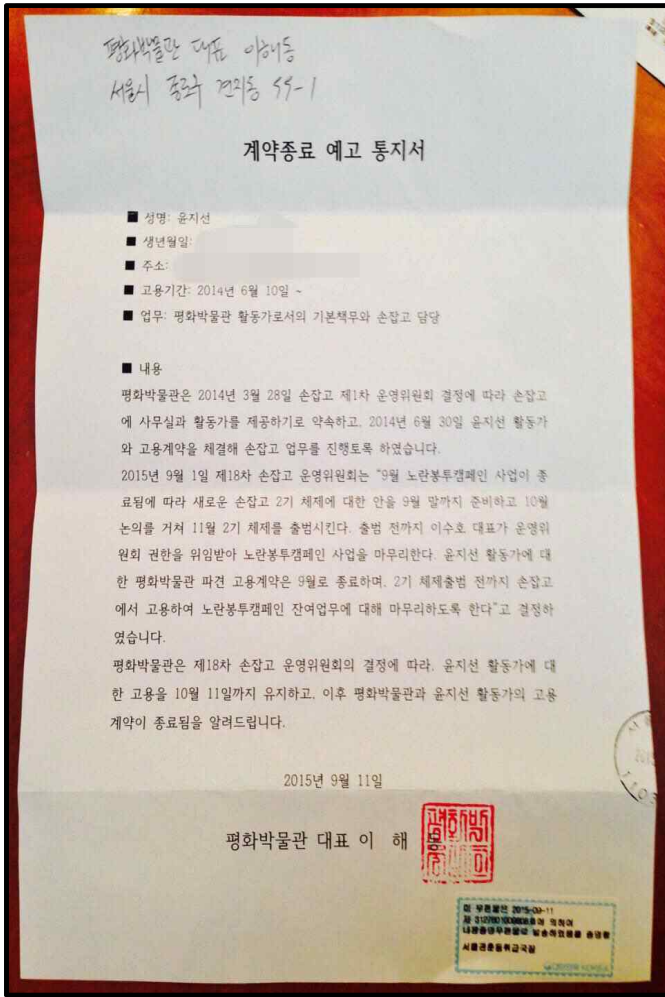


사진 2 : 2015.9.11. 평화박물관이 보낸 해고통지서

이중 정체성으로 설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활동가를 평화박물관 소속으로 활용하거나 손잡고 소속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확인된다. 즉 손잡고 2기가 출범하면서 요구했던 CMS 회비 이관 요구에 대해서 평박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8개월분의 급여와 19개월분의 사무실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한 행위가 이 같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위에서 적시했듯이 이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만일 이 의심과 같이 의도적으로 활동가를 평화박물관과 손잡고 이중 멤버십으로 설정해 놓고 양 조직의 필요에 따라 각 업무에 동원시켰다면 이는 심각한 부당 노동 행위를 넘어 이른바 노동력 착취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홍구 전 위원이 손잡고 활동가 충원을 논의할 때 활동가에게 평화박물관 70%, 손잡고 30% 업무를 전제로 채용하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실제 활동가와 평화박물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시간에 대해 “다만, 평화박물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는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함”이라고 기재해놓았다.(첨부4) 이 두 사례를 종합해보면 노동력 착취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반박문 내용 중 활동가가 평화박물관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언급되면서 이 사실이 마치 활동가의 고용 주체가 평화박물관이며 결론적으로 평화박물관이 해고 통지서를 보내 해고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논리를 확보하고 싶은 것으로 파악된다. 진상조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지만 활동가는 동일한 업무 공간 내에서 <한홍구 운영위원-사무처장-활동가>라는 지시체계에 따라 평화박물관 참여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마치 이 상황을 활동가가 평화박물관 소속임을 자인한 것이므로 해석하여 평화박물관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을 넘어 논리의 의도적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평화박물관과 손잡고의 관계를 살펴보자.

반박문은 손잡고가 인큐베이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조직 상황이었고 한홍구 전 위원이 손잡고의 물적 토대를 거의 구축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손잡고 재정을 평화박물관의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예산을 전용해도 상관없다는 면죄부로 작동될 수는 없다. 보통 인큐베이팅을 하는 다른 조직들을 예로 들어보면 해당 월에 입금되는 CMS 회비를 익월 1일 등 상호 약정된 일자에 인큐베이팅을 받는 해당 조직의 통장에 입금하며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 룰이 어겨지면 필경 인큐베이팅 조직의 예산 전용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평화박물관은 손잡고의 인큐베이팅 단체로 이 룰을 지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평화박물관이 손잡고 고유 계좌로 CMS 회비를 입금한 것은 단 두 차례인데, 2015년 12월 아름다운재단이 당시 임시대표에게 보낸 메일 공문(첨부 3)을 1기 소속이었던 모든 운영위원진에 회람하고 나서야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액만 임시 대표 계좌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송금했고, 이후 손잡고가 두 차례에 걸쳐 CMS 회비를 보내달라는 공문 요청에 2016년 7월에 이르러서야 활동가의 8개월 급여 및 19개월의 사무실 사용료를 공제하고 보냈다.

그리고 손잡고 사업으로 인해 입출금된 인큐베이팅 용 평화박물관 계좌의 통장 사본이나

지출 증빙 내역은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손잡고로 그 증빙 내역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반박문의 내용과 같이 한홍구 전 위원 스스로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나가는 말

반박문에 활동가의 실명이 여러 차례 등장하여 ‘000이 나름 열심히 하기는 하였으나 시야가 좁고, 노동 현장만 쫓아다닐 뿐 시민과 노동의 만남이라는 손잡고 원래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무국장을 맡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000 활동가는 손잡고의 재정 계획과 지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면서 000 사무처장이 재정지출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등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반박의 범위를 넘어서 활동가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인용된 언급은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해당된다. 이 언급은 진조위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활동가가 한홍구 전 위원과 사무처장이 손잡고 운영위에 보고 절차를 누락한 채 재정지출을 손잡고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을 왜곡해 표현한 것으로 이는 위계구조를 떠나 활동가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반박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실명이 거침없이 거론되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홍구 전 위원이 올해 4월 손잡고의 두 운영위원과의 간담회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아래 첨부 자료로 부기한 손잡고 공문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어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시 두 위원이 간담회 시 보여주었던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여 공개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손잡고진조위는 한홍구 전 위원이 지금이라도 자신을 성찰하여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공제한 CMS 회비를 손잡고에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손잡고 CMS 회비는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는 현장노동자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고귀한 정성이 모인 것이기에 손잡고는 어떤 경우도 그 회비를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이다.

[첨부1]



주소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대성스카이렉스 501호
전화 : 02-725-4777 / 전송 : 02-735-5810 / 홈페이지 www.sonjabgo.org / 이메일::sonjabgo47@gmail.com

- ◎ 수 신 : 평화박물관
- ◎ 참 조 : 식미화 사무처장
- ◎ 발 신 : 손잡고
- ◎ 발송일자 : 2016년 4월 1일
- ◎ 제 목 : [공문] 2016년 손잡고 총회 자료 제출 요청의 건

1.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손잡고는 2016년 4월 25일(화) 회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총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및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CMS 기금을 오는 4월 6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료 및 마이월 CMS 기금

1) 회원 명부 및 CMS 기금

① 회원명부 : 2014년 4월 서울시에 등록된 제안자 550인에 대한 회원명부(인적사항 포함) 및 현재 등록 CMS 회원명부(인적사항 포함) 일체(정기회원과 일시회원 포함)

② 재정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 CMS통장에 대한 은행 입출금 내역 및 통장사본,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일체

③ 현재까지 입금된 CMS 회비 전액

※ 입금계좌 : 신한 100-030-200970 (예금주 : 손잡고)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과 고유번호증 각 원본, 2014년 4월 서울시 등록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

2. 서울시기부금등록 사업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

- 2015년 8월 제출한 모집마감완료보고서 파일

3. 손잡고 대표전화 번호 명의 이전(끝)

[첨부2]



주소 : (03174)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14층 1428호
전화 : 02-725-4777 / 전송 : 02-735-5810 / 홈페이지 www.sonjabgo.org / 이메일::sonjabgo47@gmail.com

- ◎ 수 신 : 평화박물관(이해동 이사장)
- ◎ 참 조 : 한홍구 이사
- ◎ 발 신 : 손잡고(대표 배춘환)
- ◎ 발송일자 : 2016년 7월 8일
- ◎ 제 목 : [공문] 손잡고 CMS 기금 및 운영 관련 자료 반환 요구의 건

1.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21일 귀 단체의 한홍구 이사는 손잡고의 안진걸, 박래군 두 운영위원과 합의된 내용임을 전제로 근거 없는 내용을 안진걸, 박래군 위원 메일로 통보한 바 있으나, 지난 4월 9일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한홍구 이사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고 안진걸, 박래군 두 운영위원은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한 후 답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별첨1. 한홍구 이사의 메일 내용. 공문 4-5쪽)
3. 이에 지난 4월 20일 진행된 손잡고 긴급운영위 회의 결과를 근거로 안진걸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홍구 이사의 메일을 통해 한홍구 이사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우니 손잡고 회원들의 회비인 CMS 기금과 관련 증빙 서류를 반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홍구 이사는 그 동안 어떤 답변도 하지 않다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자의적인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4. 손잡고는 이에 대해 한홍구 이사가 관련 진행과정과 내용에 있어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는 바, 귀 단체는 다시 한 번 관련 사안의 진행 과정과 손잡고의 요구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래>의 내용을 7월 15일 (금) 오후 5시까지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이 기한까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손잡고는 유감스럽지만 부득이하게 민·형사를 포함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한홍구 이사가 보낸 내용은 근거 없는 합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확인은 의미가 없으나 귀 단체의 실행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요청 사항에 대해 ‘※’ 표로 손잡고의 입장을 확인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1) CMS 통장 잔고 전액을 [신한은행 100-030-200970, 예금주 : 손잡고]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 3. 28. 1차 운영위원 회의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비 등 3~4천 만 원 예상, 사무실과 활동가는 평화박물관에서 제공”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어떤 운영위 회의에서도 이후에 평화박물관이 사무실 사용료와 인건비를 손잡고 CMS 기금에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결정이 없었습니다. 이는 손잡고 출범과 함께 진행된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귀 단체가 손잡고의 사무실 사용료와 손잡고 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결정으로 손잡고 출범 당시 귀 단체의 순수했던 초심을 상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CMS 회비 전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별첨2. 1차 운영위 결과. 공문 6-8쪽)

(2) 위 회비 전액 외 2015.02.12. 콜비츠 전시회 명목으로 평화박물관으로 이체된 300만원

※ <2015년 2월 12일 평화박물관으로 이체된 300만원은 2014년 2월 손잡고 발족 이후 평화박물관이 지출한 제경비를 300만원으로 추산(실제는 훨씬 많습니다.)하여 정산한 것입니다. 정산된 경비가 콜비츠 전시회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지 손잡고의 회비를 콜비츠 전시회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해명은 지난 2015년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안건이나 보고로 제출된 바 없는 임의적인 주장이므로 손잡고는 이 해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1차 운영위는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비 등 3~4천 만 원 예상, 사무실과 활동가는 평화박물관에서 제공”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어떤 운영위 회의에서도 이후에 평화박물관이 사무실 사용료와 인건비를 손잡고 CMS 기금에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홍구 이사가 주장하는 제경비 300만원이 평화박물관에서 제공하기로 한 운영비 외의 명목으로 소요된 것이라면 그 근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경위로 콜비츠 전시회 명목으로 기재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위 금액 300만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손잡고 CMS 업무와 관련한 필수적인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 및 자료도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손잡고 CMS 등록내역증빙 : 년도별 월별 가입건수 및 출금액수 기재 및 이에 대한 확인자료

② 회원명부 : 2016. 4. 4. 일자 이메일로 도착한 서류는 CMS 출납명부로 보고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CMS 회원의 가입년월별/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소가 포함된 회원명부(평박의 CMS 원본 보관이 필요하다면 명단 사본)

※ 지난 4월 한홍구 이사와 안진걸, 박래군 운영위원 간담회 직후 귀 단체에서 보내온 서류상자 안에는 CMS 기금 사용에 대한 증빙 내역은 단 한 장도 없었으며 위 요청에 부합하는 자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 확인드립니다. (끝)

[별첨1]

평화박물관

: 2기 손잡고 사무국

발신: 평화박물관(1기 손잡고 사무국) 02-735-5812

참조: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목: 손잡고 사무국 이관에 따른 정산처리

날짜: 2016년 4월

2016년 4월 2일 박래군 상임이사, 안진걸 협동처장과 평화박물관 한홍구 이사 사이에 합의된 내용의 정산내역입니다.

1. 손잡고 지출 내역

	급여	국민보험	건강보험
1407	1,475,000	51,525	34,293
1408	2,047,500	51,525	51,439
1409	1,475,000	51,525	34,293
1410	1,475,000	51,525	34,293
1411	1,475,000	51,525	34,293
1412			
1501			
1502	1,490,000	26,100	35,206
1503	1,490,000	26,100	35,206

평화박물관 사무처 지급 손잡고 활동가 급여 및 사업장부담 보험료 : 합계 11,496,348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계상하지 않음)

공간 및 각종 공과금 사용료 : 1402~1508 : 19개월 * 30만원 = 5,700,000원

총 합계 : 11,496,348 + 5,700,000 = 17,196,348원

2. 손잡고 CMS 월 회비 (마지막 정산 이후)

1512	3,588,325
1601	3,613,820
1602	3,500,360
1603	3,468,275

4개월간 총 월 회비 : 14,170,780원

평화박물관이 지불할 금액 : 14,170,780 - 17,196,348 = -3,025,568원

평화박물관

: 2기 손잡고 사무국

발신: 평화박물관(1기 손잡고 사무국) 02-735-5812

제목: 손잡고 사무국 이관에 따른 정산처리

날짜: 2016년 6월 21일

1. 손잡고와 평화박물관 간의 정산은 이미 2016년 4월 2일 손잡고의 전권 대표로 온 박래군, 안진걸 두 운영위원과 평화박물관 한홍구 이사 사이에 원만히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1. 그날 박래군, 안진걸 두 운영위원은 한홍구 이사가 평화박물관을 통해 손잡고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손잡고의 재정이 충분히 마련되기 이전에 평화박물관이 손잡고 활동가에게 지급한 급여와 공간 사용료를 제하고 CMS 계좌의 잔액을 손잡고에게 넘기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1. 박래군, 안진걸 손잡고 운영위원과 한홍구 평화박물관 이사 사이에 합의서 작성 이후 손잡고 회원들의 평화박물관 CMS 해지까지 4월분과 5월분이 입금되었습니다.

4월 3,432,945원/ 5월 3,324,100원

여기에 지난 정산서에서 평화박물관이 지불할 금액 - 3,025,568을 계상하면 3,731,477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귀 회가 알려주신 신한은행 계좌로 6월 22일(수)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2월 12일 평화박물관으로 이체된 300만원은 2014년 2월 손잡고 발족 이후 평화박물관이 지출한 제경비를 300만원으로 추산(실제는 훨씬 많습니다.)하여 정산한 것입니다. 정산된 경비가 콜비츠 전시회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지 손잡고의 회비를 콜비츠 전시회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2015년 12월 10일 전인철(극단 돌파)에게 지출된 100만 원은 <노란봉투> 연극의 집필과정에서 사실상 무대가 되었던 안산 SJM 노조 방문 공연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전인철 씨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노란봉투>의 연출자였습니다. <연우무대>에서 <노란봉투> 공연이 절찬리에 이루어진 후 1기 운영위원회는 투쟁현장을 찾아가며 <노란봉투> 공연을 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2015년 여름 유성기업을 찾아가 현장공연을 하였고(그때는 훨씬 큰 돈을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12월 SJM 노조방문 공연 때는 배우들의 헌신으로 100만원으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현재 평화박물관은 손잡고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박물관이 확인한 자료 일체는 4월 2일 박래군, 안진걸 두 분께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1. 손잡고 사업을 발의하고 1기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졌던 평화박물관은 2기 운영위원회도 독자적인 재정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별첨2]

손잡고 1차 운영위원회의

2014. 3. 28(금) 오전 9:00 평화박물관

참석: 조국, 은수미, 이수호, 한홍구, 서해성

1. 손잡고 조직 정비 관련

1) 조직구성

대표: 조은, 조국

운영위원: 은수미, 이수호, 한홍구, 서해성, 박래군, 하종강

2) 제안자 동의

제안자 총 550여명, 메일발송 349명 중 215명 찬성, 이의제기 0명

2/3동의에 필요한 추가 의견은 국회 내 제안자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이훈희)

3) 종교계 참여확인은 다음회의 때까지

성공회(은수미), 원불교(서해성), 조계종-도법스님(조국)

4) 활동위원회

- 법제도개선 활동: 은수미, 조국

4월 전문가 간담회 준비

법안 전체와 보완해야 할 법안(노동법, 민법, 형법) 검토, 특히 민법

1년 활동 프로그램 준비(국제심포지엄 등)

조국 대표와 운영위원도 참여요청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심포지엄과 논문 축적

국정감사 시 대법원 행정처 대상 판례 지적 필요

윤리적 판단 이상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만들어 대응하고 홍보

- 언론인터뷰기고 활동: 한홍구

- 기금관리위원회 활동: 이수호

- 문화기획, 캠페인, 홍보 활동: 서해성

5) 추가 참여자

앞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안자가 아닌 회원 개념으로 정리

단체참여도 허용하나 가급적 개인 참여를 권장하는 것으로

2. 단체등록 추진 관련

제2장 회원은 사람과 '단체' 추가

제3장 기구에 '공동대표'와 '대표단'은 '대표'로 하고 이하 관련 내용 통일
다음 주 단체등록 추진 예정

3. 손잡고 재정 보고 관련

1) 운영비 마련 방안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비 등 3~4천 만 원 예상

사무실과 활동가는 평화박물관에서 제공

나머지 2천여 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 확보 방안 필요

노동 분야 강연 정보제공 또는 조직 (이수호)

강연 시 손잡고 회원가입 유도(회원가입서 공유, 요청 시 현장지원)

시민학교 운영

2) 분담금과 회비

운영위원 분담금 자발적으로 부담

제안자 분담금은 1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

회원은 5천원에서 1만원 회원가입, 단체는 월 2만원 혹은 20만원

단체등록 후 후원계좌 개설 후 본격 추진

4. 아름다운재단 기금심의 진행 관련

1) 민변 추천 좌세준 변호사 참여

2) 운영위원 중 이수호 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5. 사업 관련

1) 아름다운재단 노란김밥 퍼포먼스

4월 23일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포토타임 시간을 확인해 운영위원이 그 시간에 맞춰 참석하는 것으로(이훈희)

은수미 의원실 주도로 아름다운재단과 실무진행

2) 캠페인 노란봉투와 손잡고

아름다운재단 사업에 함께하고 손잡고는 법제도개선 활동 중심으로

3) 손잡고-한겨레 공동기획 보고진행

4) <24시간 만화> 제안

좋은 제안이며 적극 추진키로

5)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제안

건치제안을 수용하되 진료지원 등의 형태는 건치의 의견을 따르기로

아름다운재단 기금심의 회의에 관련 제안 공유(이수호)

6. 기타

1) 4월 7일 2차 운영위원회회의와 아름다운재단 저녁 약속

- 오후 5시 제2차 운영위원회, 조은대표 만남(아름다운재단 1층 회의실)
운영위원회회의에 아름다운재단 모금담당 실무자 참석해 인사와 실무회의
- 오후 6시30분 저녁(아름다운재단 인근)
모금국장과 실무진 저녁식사 참석여부 확인 중

2) 4월 23일 3차 운영위원회회의와 국회 노란김밥 캠페인

- 노란김밥 캠페인 후 운영위원회회의
- 조은대표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
- 포토타임 시간 확인해 추후 정확한 시간 공지

3) KBS <추적60분> 4월 12일 손배가압류 프로그램 방영

[첨부3]

보낸사람: 000 15.12.18 10:02

[제목]긴급요청 메일 내용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난 12월 15일, 16일 00재단 000 사업국장을 통해

연말까지 손잡고 노란봉투캠페인 사업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초 행정자치부에 사업보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단체 및 대표자에 대한 벌금 및 형사적 책임이 주어지고, 단체의 존립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원래 2015년 6월 종료되기로 한 것인데 8월, 10-11월에 걸쳐 연기가 되어 더이상의 연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긴급생활비지원 사업은 이미 보고가 끝났음에도 노란봉투법 캠페인 사업보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캠페인 사업 중 손잡고 자부담(CMS 회원 모금 등을 통해 지출된 부분)에 대한 회계정리 및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입니다.

현재 손잡고 회비는 평화박물관 CM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잡고가 별도의 CMS를 만들기전까지는 평화박물관 CMS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 손잡고 CMS를 만들기전까지 평화박물관 CMS를 활용하는 것과 병행하여 2) "기 CMS를 즉각 이월"받아야 연내 사업보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CMS 회원통장은 이미 11월까지 배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 즉각 이월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사안을 1기 운영진 전체 및 손잡고 사무국에 알리는 이유는

첫째, 만의 하나 노란캠페인 사업보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모든 분이 알고 있어야 하며

둘째, 기 CMS 이월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관할 아래서 00재단에대한 사업보고를 연내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1기 사업도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끝내려 하며, 특히 이 사업보고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셋째, 12월 1일 공동대표 및 법적대표 수락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제1기 손잡고로부터 재정 등 모든 문제를 인수인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기 운영진 전원 사퇴와 공동대표 및 법적대표로의 전환을 수락(합의)한 것이 무효가 되거나

최소한 3인공동대표의 사임이 불가피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12월 21일까지는 기CMS 이월이 이뤄져야 12월 31일까지 사업보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00재단 사업보고와 관련하여 이런 긴급한 문제가 있는 것을 최근 3일간 알아 협의가 늦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적어도 00재단과의 사업만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고 힘을 모아주시시오.

활동가 계약서

1. 양 당사자

대 표	성명	이해동
	사업장명칭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99-1
활동가	성명	윤지선
	주소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2.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활동계약기간: 2014년 6월 2일~
2. 활동장소: 평화박물관
3. 업무내용: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로서의 기본책무와 손잡고 담당
4. 활동시간 : 9시30분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평화박물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는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함
5. 휴일.휴가 : 매주 토·일 휴무/ 기타 국가지정 공휴일/ 월차 및 연차를 보장함, 다만 평화 박물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는 휴일.휴가를 탄력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
6. 임 금
 - 월급: 1,145,000 원
 - 상여금: 연 100%
 -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 임금지급일: 매월 1일(휴일의 경우는 지급월 기준으로)
 - 지급방법: 직접지급(), 예금통장에 입금(✓)
 - 평화박물관의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실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 시민단체 재정의 궁핍함, 계산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휴일 및 연.월차 휴가근로수당은 상기 합의한 기본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시민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함

2014년 06월 02일

대 표: 이해동



활동가: 윤지선

(인) 윤지선

